제2020-17호

무 투 표 실 시 안 내

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2020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0년 3월 17일

대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